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이 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“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”을 “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영 제명 변경을 변경하고, 그에 따른 자구 및 별표 수정(안 제1조, 제2조, 별표)
- 나. 법률 개정 심의시 제기된 박물관 운영평가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정비(안 제1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”을 “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”을 “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할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·고고(考古)·민속·예술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“국립해양박물관이 아닌”을 “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”으로, “국립해양박물관이라”를 “국립해양박물관

·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라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“국립해양박물관이”를 “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”로, “국립해양박물관과”를 “국립해양박물관 ·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</u>	<u>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해양 박물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국립해양 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」----- -----.
제2조(박물관자료) 「국립해양박 물관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“이란 국립해 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“이라 한 다)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· 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 할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·고고(考古)·민속 ·예술·과학·기술·산업 등 에 관한 유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	제2조(박물관자료) 「국립해양박 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 5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“이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“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 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관리· 조사·연구·전시할 학문적·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 사·고고(考古)·민속·예술· 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유 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

<u>한정한다.</u>	<u>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.</u>
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(생략)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·업무효율성의 정도, 예산·조직·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</u> 2.·3. (생략) ③ (생략)	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31